## 06\_06. 기타사고

판결요지	피해자 과 실	사건번호
[사고발생경위] 주유계량기 설치 및 변경공사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저장탱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경유 주유기와 지하의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보조맨홀 안에서 해머드릴로 체크 밸브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벽의 파쇄작업을 하다 발생한 불꽃이 마침맨홀 안에 있던 가스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음. [사용자측 과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맨홀 안에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존재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사고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순서 등을 직접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맨홀 안에 인화물질의 잔존가능성이 있어 화재의 위험이 높으므로 수시로 위험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고, 아울러 지급된 작업곡과 안전화 등을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 및 보내 기업으로 한 기업 기업으로 하고 되었다.	50%	서울고법 2003나55501
의에 반바지만을 입고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생산직 사원으로 폴리에스테르가 만권된 지관을 와인더로부터 빼내어 운반차에 실어주는 도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핑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오토도퍼기가 설치되면서 작업자도 줄고 만권된 지관의 무게도 늘어났다. 오토도퍼기는 자주 고장났고, 이때에는 수동으로 도핑작업을 하였는데, 도핑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허리에 이상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여 직원들은 회사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묵살하였다. 이후 오토도퍼기의 고장으로 수동 도핑 작업을 하던 중 요추추간판탈출의 증세가 생겼다. [사용자측 과실] 수동으로 도핑작업을 할 경우가 얼마나 잦은지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단시간 내에 오토도퍼기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동으로 도핑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수동 도핑작업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2년 전 요추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감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과실.	30% ·	광주고법 2002나1818

TEL: 02-458-8216 FAX: 02-457-4971 **1** 

[사고발생경위] 용접공이 1미터 높이의 용접대 위에 30kg의 파이프를 손으로 들어 올려놓고 용접을 한 후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요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음. [사용자측 과실] 보조공 1명을 더 배치하여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작업	40%	광주고법 98나3569
에 맞는 적정한 인원을 배차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자동차 조립공이 작업반장의 지시로 마르샤 승용차 엔진 장착 작업을 하던 중, 350kg 정도의 엔진이 실린 대차를 차체 엔진룸 장착 위치로 잡아당기다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음. [사용자측 과실] 대차 롤러가 닳아 잘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방치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이를 사전에 점검하여 롤러를 교체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시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롤러가 닳아 잘 움직이지 않는 대차를 불안정한 자세에서 혼자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잡아당긴 과실.	30%	부산고법 98나6497
[사고발생 경위] 폭발물 점검, 정비 및 수리 담당자가 2천 파운드 폭탄 4개가 실려 있는 폭탄 운반용 트레일러를 견인차량에 연결하는 작업을하던 중, 트레일러의 고리뭉치를 들고 당기다가 적재물의 무게로 쉽사리 움직이지 않던 고리뭉치가 갑자기 젖혀지는 바람에 고리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어 요추압박골절상을 입음. [사용자측 과실]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작업인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급격한 힘을 가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고리뭉치가 갑자기 젖혀질 것을 예상하여 자신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료작업원에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호흡을 맞추어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50%	광주고법 99나6653

PNS TEL: 02-458-8216 FAX: 02-457-4971